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정 2024. 3. 18. 국장결재 금융기획팀-285

제1조(목적) 이 절차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은행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의료·교육 관련기업
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15. 기타 지원기업
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업체의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① 각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대출취급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본부별 담당지역은 <별표2>에 따른다.

1. 각 지역본부 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각 지역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더라도 그날은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되는 세칙 제4조제2항제6호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 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
2. 부동산업, 주점업 등 <별표3>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
3. 그 밖에 각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

제4조(대출취급실적 제출) ①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달 15일까지(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취급실적을 심사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심사) ① 각 지역본부장은 매월 배정 이후 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후심사 검증대상 목록을 생성한 후 위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대상 목록 이외의 대출취급실적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요청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사후심사를 위한 징구자료 목록 및 자료 제출 방식 등

을 정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 결과를 다음 달 한도 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관리)** ① 각 지역본부장은 매분기 직전월에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직전 3개월간 대출취급시 금리 감면폭,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모점별 등급을 산정하며, 산정이 완료된 등급은 해당 분기 중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각 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급은 A, B, C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 금융기관 결제모점 중 A등급은 20% 이하, B등급은 60% 이상, C등급은 20% 이하가 되도록 배분한다.
- ③ 각 지역본부장은 C등급인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대해 해당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 중 매월 대출취급실적에 따른 배정액의 10%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을 A등급(A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인 금융기관의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재배정할 수 있다.

- 제7조(제재)** ① 각 지역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재에 따른 대출한도 감축금액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금액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재금액이 대출취급실적에 따른 배정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상회하는 금액을 이월하거나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일몰제)** 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에 대해 제재하고 마지막 지원 실적시점부터 2년간 신규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2024. 3. 18.>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 및 각 지역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 관련 종전 세칙 및 운용기준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²⁾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A2	벤처기업		
A3	혁신기업		
A4	녹색기업		
A5	연구개발우수 기업		
A6	추천기업 ³⁾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A9	전입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A12	의료·교육 관련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⁴⁾		
A15	기타 지원기업 ⁴⁾		
A16	경기부진·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3)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4)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본부별 담당지역

지역본부	담당지역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본부 담당지역 제외)
목포본부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본부 담당지역 제외)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본부	충청북도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강릉본부 담당지역 제외)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본부	경기도(인천본부 담당지역 제외)
경남본부	경상남도
강릉본부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포항본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별표3>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

◆ T9-명세

- 전문종류 : 여신 -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취급실적 명세
- 전문경로 : 금융기관 → 한국은행
- 송신시점 : 09시 00분

항 목	길이	누계	내 용
금융기관	9(4)	4	- 금융기관 4자리 코드
처리일자	9(8)	12	- yyyymmdd
업무구분	9(4)	16	- 언제든지 2409
빈칸1	X(1)	17	- 언제든지 Space
대출실적년월	9(6)	23	- yyyymm(전월)
각행관리번호	X(20)	43	- 각 금융기관관리번호(식별자), 숫자 또는 특수 문자
지원대상	9(2)	45	- 지원대상 코드(A1~A18)의 숫자 부분
지원부문	9(2)	47	01. 일반1, 02. 특별, 03. 일반2, 04. 전략, 05. 한도1, 06. 한도2, 07. 한도3
관할 지역본부	9(4)	51	- 지역본부 4자리 코드
폐업업체 여부	9(2)	53	00. 폐업업체 아님, 11. 위규
폐업업체 여부_금융기관 소명	9(2)	55	00. 폐업업체 아님, 22. 업체 신고 지연
대기업 여부	9(2)	57	00. 대기업 아님, 31. 위규
주채무계열 소속 여부	9(2)	59	00. 주채무계열 소속 아님, 32. 위규
중도상환보고 누락	9(2)	61	00. 중도상환보고 누락 없음, 41. 위규
부도업체 여부	9(2)	63	00. 부도업체 아님, 51. 위규
규정위반 등 기타	9(2)	65	00. 기타 위규 아님, 52. 위규
빈칸2	X(1)	66	- 언제든지 Space
업체정보 - 업체명	X(20)	86	
- 업체소재지	9(5)	91	- 우편번호 5자리 숫자
- 사업자구분	9(1)	92	1. 개인, 2.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9(10)	102	
- 법인등록번호	9(13)	115	- 개인사업자는 공란
- 업종	9(5)	120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 신용등급	9(2)	122	- 금감원 앞 보고 10등급 기준, 무등급인 경우 00 입력
빈칸3	X(1)	123	- 언제든지 Space
대출정보 - 취급점포명	X(12)	135	
- 취급점소재지	9(5)	140	- 우편번호 5자리 숫자
- 자금구분	9(1)	141	1. 시설, 2. 운전
- 보전방법	9(1)	142	1. 순수신용, 2. 담보, 3. 보증, 4. 혼합
- 대출실행일	9(8)	150	- yyyymmdd
- 대출만기일	9(8)	158	- yyyymmdd
- 대출잔액(원)	9(15)	173	- 0이면 예러
- 대출금리	9(4)	177	- 예) 1.23%면 "012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대출금리감면폭	9(4)	181	- 예) 1.23%p면 "012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계	X(181)		